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일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997 발의연월일: 2024. 8. 20.

발 의 자:서일준·고동진·권영세

안상훈 • 이헌승 • 박성민

이상휘 • 백종헌 • 강대식

조경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도로에 설치된 전주(電柱)가 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에 방해가 되어 이를 옮기거나 땅속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 주체가 그 비용의 절반만을 부담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'전주'라는 용어는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아 일반 국민이 법률을 이해하기에 어려운 한자어로, 법제처는 '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'에서 '전주'를 정비 대상 용어로 선정한 바 있음.

이에 '전주'를 '전봇대'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2조).

법률 제 호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의 제목 중 "전주"를 "전봇대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2조(<u>전주</u> 이설비용 부담에 관	제22조(<u>전봇대</u> 이설비용 부담에
한 특례) (생 략)	관한 특례) (현행 제목 외의 부
	분과 같음)